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39

발의연월일: 2021. 2. 2.

발 의 자:김승수 · 윤재옥 · 김용판

이종배 · 김희국 · 강대식

김예지 · 서범수 · 이명수

이종성 · 최형두 · 유경준

홍석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2018년 기준 87.4%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콘텐츠산업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사업의 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사업으로 지역 생태계가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임.

전국의 고른 콘텐츠산업 발전과 지역 문화분권 촉진 차원에서 지역 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육성 및 발전하여 지역경쟁 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영국, 중국, 호주 등도 지역별 집중 육성 분야를 분류해서 지원하는 등 중앙보다 지역 주도로 문화산업을 육성 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제31조제7항제16 호 신설). 법률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
립) ① ~ ⑥ (생 략)	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	업을 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6.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
	산업의 진흥 및 육성
<u>16</u>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u>17</u> . (현행 제16호와 같음)
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